

전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31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이 2018. 2.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3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11. 23. 주식회사 E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은 2018. 2. 19. 피고와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E은 2019. 10. 23.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식회사 E의 D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이 피고에게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래 부친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친을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동생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주었는데, D이 당구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하여 모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2017. 6.경 당시 공시지가

상당인 4,36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지급했다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시기보다 늦은 2017. 10. 12.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부 동 산 목 록

1. 전라북도 김제시 F 대 60㎡

2. 전라북도 김제시 F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G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스테이트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39.96㎡(점포)

2층 30.6㎡(단독주택). 끝.

